

# 운전면허와 벌점관리

##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일반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의 40점 이상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 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 무사고로 누산점수에서 공제 경과한 때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 ·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li> <li>•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li> <li>•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li> <li>• 단속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 외 12건</li> </ul>		전체 16개 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 2.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위 반 사 항	벌점(1점 1일)	기타처분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2.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 부과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즉심회부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12.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3.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5.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6. 앞지르기 방법 위반		
17.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8. 승객 또는 승 · 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20.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20-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 3.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구 분	별 점	내 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지연 자진 신고(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내 자진 신고(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15점	